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리산정체계 개선 및 금리공시〉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35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3
가. 대출금리 산정체계 법제화(안 제30조의3제1항)	6
나. 대출금리에 교육세 등 포함 금지(안 제30조의3제2항)	7
2. 대출금리 세부항목 공시	14
3.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부칙)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

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대출금리 산정방식 법제화 등

-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위험관리비용, 법적 의무비용과 목표이익으로 구성하도록 하되(안 제30조의3제1항), 법적 의무비용에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법정 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0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3(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 ① 은행의 대출금리는 제33조에 따라 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 또는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장금리 중 은행이 선택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이율(이하 “가산금리”라 한다)를 더하여 산정한다. 1. 대출업무 수행에 드는 업무 원가 2. 각종 위험 관리에 드는 비용 3.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4. 목표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현행	개정안
	2. 제30조제1항의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이하 생략)

□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음.

○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가산금리의 세부항목으로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법적 비용, 기대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명시하고 있음¹⁾.

1)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은 【참고자료 1】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 규준(2022.10.18.개정)에 따른 대출금리 구성체계 참조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체계]

① 기 준 금 리	②가산금리						③가감조정 전결금리	
	원가	위험 관리비용			법적 비용	기타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교육세, 출연료	기대 이익률	부수·채 감면금리

주: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는 가감조정 전결금리도 가산금리의 세부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표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함.

자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2022.10.18.)을 토대로 재작성

□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²⁾을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세, 법정 출연금, 지급준비금 예치금 및 예금보험료 등을 가산금리 항목인 법적 비용에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를 ①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② 가산금리는 i) 업무원가, ii) 위험 관리비용, iii) 법적 비용, iv) 목표이익률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③ 법적 비용에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5대 시중은행 이자이익(조원) : ('21)29.8 ('22)36.3 ('23)38.4 (자료: 각 은행 경영현황 공개보고서)

[대출금리 구성 항목 비교]

대출금리 구성 항목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
기준금리			○	○
가산금리	업무원가		○	○
	위험 관리비용	리스크 프리미엄	○	○
		유동성 프리미엄	○	
		신용 프리미엄	○	
		자본비용	○	
	법적 비용	교육세	○	×
		출연금	○	×
		예금자보험료	×	×
		지급준비금	×	×
목표이익률		○	○	
가감조정	부수거래 감면금리		○	×
전결금리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	×

주: 종전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는 예금자보험료, 지급준비금 예치금이 법적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2.10.18. 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는 삭제됨.

가. 대출금리 산정체계 법제화(안 제30조의3제1항)

□ 개정안과 같이 대출금리의 산정체계 및 가산금리의 세부적인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현행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감조정 전결금리(‘우대금리’)를 대출금리의 구성요소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우대금리 제외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

감조정금리를 가산금리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금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해외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산정의 세부방식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나. 대출금리에 교육세 등 포함 금지(안 제30조의3제2항)

- 개정안은 은행이 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① 교육세, ② 법정출연금, ③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예치금을 대출금리 구성항목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출금리 구성항목의 포함 여부는 해당 비용의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항목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교육세의 대출금리 포함 금지 여부는 교육세 부과체계와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세법」 제3조 및 제5조³⁾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를 곱하여 부과·징수되고 있으며⁴⁾, 이에 따라 2023년 은행이 부담한 교육세액은 7,521억원 규모임.

[최근 3년 은행의 교육세]

(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교육세	3,837	5,396	7,521

자료: 은행연합회

○ 은행은 해당 교육세를 대출금리에 반영함으로써 차주가 교육세 납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여 은행이 교육세를 직접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현행 과세체계를 고려할 때 교육세를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부당한 전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 은행에 대한 교육세는 ‘대출이자’에 부과되는 간접세⁵⁾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⁶⁾,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다른 간접세도

3) 【참고자료 2】 가산금리 중 법적비용 항목의 법적 근거 조문 참조

4) 소비과세이며, 소득과세나 재산과세가 아님.

5) 직접세는 법률상의 조세의무자와 실제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이고, 간접세는 입법자가 조세부담을 납세의무자 외의 자에게 전가할 것을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임.

6) 은행연합회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금융회사의 수익금액에는 면세되고 있어 이를 대신하는 세목으로

소비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세가 부과되는 휘발유, 차량, 주류 등 다른 품목도 모두 교육세를 가격에 반영⁷⁾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출자가 교육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임.

- 그러나 교육세가 부과되는 다른 품목의 경우 각 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주세액)이 과세표준인 반면, 은행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⁸⁾이 과세표준이어서 다른 항목과 차별성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이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를 대출이자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둘째, 법정출연금의 대출금리 포함 금지 여부는 신용보증제도의 수익자와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정출금은 개별 법률⁹⁾에 근거하여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

교육세가 신설되었고, 교육세는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소득에 부과하는 직접세와 달리 관련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수익금액에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세가 간접세적 성격을 갖는다는 의견임.

7) 교육세 과세 대상의 소비자 가격 산정 내역

(휘발유) 제조원가 + 교통세 + 주행세 + 교육세 + 부가세 등

(자동차)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취득세 등

(주류) 제조원가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등

8)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미함.(교육세법 제5조제3항)

9) 【참고자료 1】 가산금리 중 법적비용 항목의 법적 근거 조문 참조

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을 실행할 때에 대출금에 비례하여 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임. 이에 따라 2023년 은행이 납부한 출연금은 약 3조원 규모임.¹⁰⁾

[최근 3년 은행이 납부한 출연금]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신용보증기금	9,847	10,484	11,679
기술보증기금	5,651	6,079	6,723
지역신용보증재단	1,853	2,003	2,13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664	8,894	9,472
합 계	25,015	27,460	30,009

자료: 은행연합회

○ 은행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이하 ‘보증부대출’)시 해당 출연금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여 출연금을 은행이 직접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 또한, 대출 원리금 장기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이 신용보증제도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음.¹¹⁾

10) 은행연합회는 신용보증제도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재원을 금융회사가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해당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에 한정하여 대출금리 산정시 출연금을 일종의 직접 비용으로서 반영하고 있는 것¹²⁾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비추어 보증부대출 이용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보증부대출 차주는 신용보증을 통해 신용이 보장되어 다른 대출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¹³⁾, 대출이 거부될 수 있는 저신용 차주도 이 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차주가 신용보증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것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도 대위변제를 통해 원금의 리스크 관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등 신용보증제도의 이익을 누리고 있고, 보증부대출 차주는 대출이자 외에 신용보증을 위한 보증료¹⁴⁾를 별도로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보증제도 운용을 위한 법정출연금을 차주가 모

11)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위변제금은 대출원금에 해당하며 이자수익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은행의 수익으로 볼 수 없고, 보증비율이 100% 아닌 경우(지역신보의 평균 보증비율 90%)에는 은행이 보증사고로 인한 부담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신용보증제도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함.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반의 대출을 실행하면, 법에 따라 해당 대출금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므로, 해당 대출금의 차주에게 그 대출금으로 인한 출연료 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13) '24.1~3월 5대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금리(신규, %) : (보증부)4.81 < (담보)5.06 < (신용)5.70

14) 보증료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이용함에 따른 수수료로, 보증금액(대출금의 90% 또는 100%)에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료율(0.5%~2.5% 수준)을 곱하여 산정됨.

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의 공평한 분담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한편, 은행연합회는 출연금을 해당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이 보증부대출을 축소할 유인이 발생하므로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음.

○ 그 외에, 은행은 개정안에 따른 4개 출연금 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¹⁵⁾,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¹⁶⁾도 납부하고 있는 바, 이를 제외 항목에 포함할 것인지에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이하 각호 생략)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 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財源)으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出捐金)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업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순익금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셋째,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예치금은 ‘대출금리 모범기준’의 개정 등을 통해 이미 대출금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종전의 ‘대출금리 모범기준’에서는 법정비용으로 출연료 및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예치금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예금자보험료 및 지급준비금 예치금은 예금자를 위한 제도¹⁷⁾로, 관련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이 아닐 뿐 아니라 예금자가 해당 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¹⁸⁾는 지적에 따라 은행연합회에서 이를 법정비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출금리 모범기준’ 개정안을 의결(2022.10.18.)하였음¹⁹⁾.

□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법적비용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은행이 목표이익률 등 다른 항목을 상승시키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17) 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이고, 지급준비금 예치금은 각 은행의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예금자가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18) 시중은행이 모두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일부 은행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

19) 2023.1.1. 시행

2. 대출금리 세부항목 공시

- 개정안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공시하되, 가산금리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고(안 제30조의3제3항), 공시의무 위반시에는 은행의 임원등이나 직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68조(벌칙)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	<u>제30조의3(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u>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리는 제1항 각 호 및 그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2. ~ 8.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3. ~ 9. (현행과 같음)

□ 「은행법」 제43조의3²⁰⁾ 및 제52조의2²¹⁾와 하위 규정인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은행의 대출금리를 매월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²²⁾, 현재 각 은행의 대출금리 정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비교 공시되고 있음.

○ 각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점수별 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항목별 공시까지는 하지 않고 있음.

20) 「은행법」 제43조의3(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1) 「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은행의 금리 공시 관련 법령 규정은 【참고자료 3】 참조

[그림 1] 가계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공시 예시(2024.6월)

가계대출 신용점수별 금리현황 (단위: %) 재 공시정보(재무상황, 리스크정보) 소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핵 핵심경영지표(기초 재무정보, BIS비율 등)

엑셀 출력하기

은행	구분	CB사 신용점수별 금리(%)										평균 신용점수	CB회사명	참고 사항
		1000~ 951점	950~ 901점	900~ 851점	850~ 801점	800~ 751점	750~ 701점	700~ 651점	650~ 601점	600점 이하	평균 금리			
NH농협은행 재 소 핵	대출금리	4.01	4.08	4.19	4.26	4.39	4.41	4.68	5.12	5.58	4.09	933	KCB	
	기준금리	3.57	3.57	3.56	3.57	3.57	3.57	3.55	3.58	3.56	3.57			
	가산금리	2.96	3.02	3.11	3.17	3.21	3.31	3.45	3.74	3.93	3.02			
	가감조정금리	2.52	2.51	2.48	2.48	2.39	2.47	2.32	2.20	1.91	2.50			
신한은행 재 소 핵	대출금리	4.05	4.05	4.20	4.32	4.45	4.53	4.82	5.42	5.30	4.11	931	KCB	
	기준금리	3.52	3.52	3.52	3.53	3.53	3.52	3.53	3.56	3.52	3.52			
	가산금리	2.31	2.31	2.44	2.51	2.70	2.77	3.03	3.56	2.71	2.37			
	가감조정금리	1.78	1.78	1.76	1.72	1.78	1.76	1.74	1.70	0.93	1.78			

* 본 자료는 2024년 6월중 취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자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2024.8.12. 조회

□ 이에 개정안은 현행 금리 관련 공시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은행의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별 금리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은 대출 가산금리의 세부항목을 공시하도록 할 경우 은행의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은행 대출상품별로 업무원가, 리스크 비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 대출 가산금리의 산출방식이 복잡하고 상품별·차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가산금리 세부항목은 대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이 없고 최종금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산금리의 세부항목 공개가 실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은행의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를 통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함께 그 효과성 여부와 경영자윤성 침해 등 은행업계의 우려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대출금리 공시의무 위반시 은행의 임원등이나 직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금리 공시 의무 위반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보아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행 「은행법」이 경영공시(법 제43조의3)나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공시(법 제52조의2)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벌은 주로 은행 건전

성 악화나 신용질서 왜곡 등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은행법」 상 제재 유형 및 위반 내용 >

제재 유형	위반 내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자본금 유지하지 않은 경우(§9) - 산업금융업무를 운영하지 않는 은행이 당좌 예금을 취급한 경우(§32) - 채권발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33) - 금지업무(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투자, 부동산 소유, 은행주식담보대출, 임직원대출 등)를 한 경우(§38) - 인가없이 합병·해산·폐업한 경우(§55) 등
1억원 이하 과태료	- 경영공시(§43의3) -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공시(§52의2) - 불건전영업행위(§34의2①) -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의무 미준수(§34의3① 등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중대 금융사고 금융위 보고 및 공시(§34의3③)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미흡 등(§52의4)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금리인하요구원 안내 의무 미준수(§30의2②) 등

주: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상의 처벌은 논의에서 제외

○ 또한, 개정안에 따른 경우 대출금리 고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되고, 예금금리 및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²³⁾되는 바, 금융소비자(대출자, 예금자) 보호 목적의 유사 의무 위반에 대해 다른 제재가 부과되는 문제도 있음.

23) 「은행법」 제52조의2 위반으로 보아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3.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부칙)

-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 약정기한이 3년 이상 남은 대출계약에 개정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대출금리는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약기간 중에 있는 대출계약 중 약정기한이 3년 이상 남은 대출계약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대출금리는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에 있는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용하도록 한 적용례(부칙 제2조제1항)는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율하려는 취지이나, 개정안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안(기존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 관련 개정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신뢰보호와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출계약에 대해 개정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²⁴⁾과 사적계약에 대한 법률상 개입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24)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1】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 기준(2022.10.18.

개정)에 따른 대출금리 구성체계

항 목		내 용
기준금리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① 또는 ②) ①대출기준금리: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의 지표금리 ②내부기준금리: 시장금리, 은행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
가산금리	업무원가	은행의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을 원가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정한 비용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 적용, 근거 명확한 경우 재산정)
	리스크프리미엄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간 차이 (월 1회 이상 재산정 원칙)
	유동성프리미엄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비용(월 1회 이상 재산정 원칙)
	신용프리미엄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담보비율, 대출만기, 업종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재산정)
	자본비용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 자본의 기회비용(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 적용, 근거 명확한 경우 재산정)
	법적비용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 및 교육세
	기대이익률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매년 1회 내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산정)
가감조정 전결금리	부수거래 감면금리	차주의 금여통장 개설 유무, 신용카드 사용실적, 수신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할인금리
	본부 조정금리,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은행의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한 조정금리 (금리인하요구권을 승인하여 대출금리 인하하는 경우 포함)

【참고자료 2】 가산금리 중 법적비용 항목의 법적 근거 조문

법적 비용		법적 근거 조문						
예금보험료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이하 생략)						
지급준비금		「한국은행법」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교육세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호별</th><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1</td><td>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td><td>1천분의 5</td></tr> </tbody> </table>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출연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법적 비용		법적 근거 조문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중간 생략)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용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중간 생략)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용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 신용보증 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금융기관의 출연금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3】 은행의 금리 공시 관련 법령 규정

「은행법」

제43조의3(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2020. 3. 24.>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20. 3. 24.>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4.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24조(경영공시)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5(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② 은행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① 영 제24조의5제2항제1호에 따

라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 이자(대출가산금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⑨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할 자료의 형식,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금감원 세칙)

제70조의6(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별표 23>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며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은행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경영상태 및 대출가산금리 등을 공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영공시

8. (공시대상)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제1항제1호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은행의 대출가산금리 공시대상 대출은 (붙임2) "대출가산금리 공시항목 및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및 가계대출로 한다.

제3장 대출가산금리 공시

9. (공시방법) ① 국내은행은 대출가산금리 공시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전 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은행이 작성해야 하는 대출가산금리 공시서식 등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③ 국내은행은 공시자료 중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

12. (공시대상)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제9항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6에 따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국내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다, 이하 '공시대상 은행')을 공시대상으로 하며, 제70조의6에 의한 비교공시는 (붙임4)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공시방법) ① 공시대상 은행은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공시자료를 매월 20일까지(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 은행이 작성해야 하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서식 등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③ 공시대상 은행은 공시자료 중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시하여야 한다.

(붙임1) 은행 경영공시 항목 및 내용

1. 국내은행

항 목		공시주기	내 용
[경 영 실 적]			
13	개요 가. 수익성	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충당금적립전이익) 내용 및 전년도 대비 주요 변동요인과 이익률, <u>원화예대금리차</u> , 명목순이자마진 현황 및 전년도 대비 주요변동내용
[기 타 현 황]			
35	여·수신 금리 결정 체계 및 금리현황	분기	여·수신 금리 결정체계, 금리현황

(붙임2) 대출가산금리 공시항목 및 내용

항 목		공시주기	내 용
1. 가계대출금리			
가계대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 대출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 대출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 전세자금대출	월		<신규취급액기준> CB사 개인 신용평점별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 조정금리, 평균신용점수, 예대금리차,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잔액기준> 가중평균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예대금리차,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2.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대출금리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	월		<신규취급액기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 조정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잔액기준> 가중평균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문 의 처
02)6788-5104